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2020. 2.



고 용 노 동 부



목 차



I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1
[붙임]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2
II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	4
III . [별첨]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신청 안내서	7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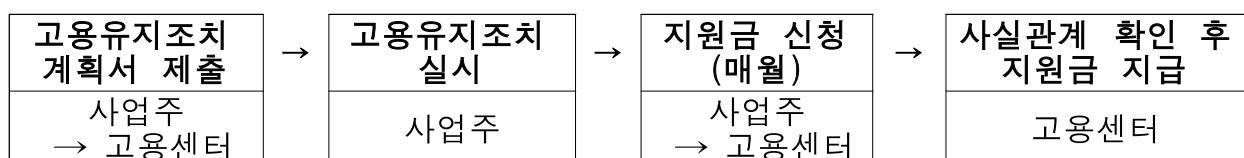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시행규칙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기준기간'이라고 한다)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 지원(신청)절차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붙임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참 고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 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 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 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 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 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 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현행과 같음
지원 한도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 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 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 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 ~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 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 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현행과 같음

II.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

<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해 드립니다.
-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7>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 ↳ (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
→ 기준근로시간 = 현재 피보험자 수(12명) × 40시간 = 480시간

<8> 총 근로시간에 연장·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다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 상당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음

<9>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0>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1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신청 안내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 -

2020. 2.



고 용 노 동 부

순 서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2.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2
3.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3
4.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4
5. 지원 상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5
6.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7
7.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필요 서류	7
〈붙임 1〉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	8
〈붙임 2〉 고용유지(휴직)조치 계획신고서	11
〈붙임 3〉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신청서	14
〈붙임 4〉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	16
〈붙임 5〉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8

1. 고용유지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계획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이상 줄이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계획을 사전신청한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등)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매출감소가 있으신가요?

기준달의 매출액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달이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2월 25일부터 계획을 실시할 경우 기준달은 1월)

4.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셨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고,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70%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신청[붙임3,4]이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1. 인터넷신청을 원하시나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 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2. 방문신청을 원하시나요?

사업체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을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신청해주세요.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붙임 5]>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셨나요?

휴업, 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휴업, 휴직)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붙임1~2\]](#)

2. 근로자와 휴업, 휴직에 대한 협의를 하셨나요?

근로자와 휴업, 휴직기간 및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그 증명서류(별도 양식없음)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함께 제출해주세요.

3.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4.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관련 서류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가요?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C	500명 이하
2.광업	B	300명 이하
3.건설업	F	
4.운수업	H	
5.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숙박 및 음식점업	I	
11.금융 및 보험업	K	
12.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위의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β이 지원되며 1일한도는 6.6만원입니다.

2. 대규모 기업이신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대규모기업입니다.

대규모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1/2이 지원되며 1일 한도는 6.6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일 경우 2β까지 지원됩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1 공통 요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①공통요건(8가지 요건 중 1가지) 및 각 ② 지원금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제출서류 (예시)
①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경우	재고량대조표
②기준달의 생산량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생산량 또는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생산량대조표
③기준달의 매출액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대조표
④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재고량대조표 또는 매출액대조표
⑤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조직구성변경 확인서
⑥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생산방식변경확인서
⑦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⑧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 ⑤~⑧을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유무판단

2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원 요건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수립[붙임1]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

*(예시) '20.3월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19.9~11월

3. 고용유지 기간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3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지원 요건

1.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붙임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

2. 수립된 계획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

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7.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서류[요약]

1 고용유지(휴업)지원금

1.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붙임1]
 2.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 <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신청서(휴업 수당지급후 매달) [붙임3]

2 고용유지(휴직)지원금

1. 고용유지(휴직)조치계획서[붙임2]
 2.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 <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휴직 수당지급후 매달)[붙임3]

붙임1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12.30>

년 제 차(월분) ☐ 근로시간 조정 ☐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 교대제 개편 ☐ 계획변경
☐ 휴업 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구 분	3개월 평균 (㉠+㉡+㉢)/3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 직전 1월~3월	직전 4월 ㉠	직전 5월 ㉡	직전 6월 ㉢
	총근로시간 (소정+초과)	㉠	* 작성생략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내역			별 지 기 재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② 총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 . . ~ . . . (일)	③ (월) 전체 피보험 자수	명
	④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	시간	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⑥ (월) 단축된 근로시 간	시간	⑦ 근로시간 단축률	%
	⑧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별 지 기 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생년월일																			
1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시간)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2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3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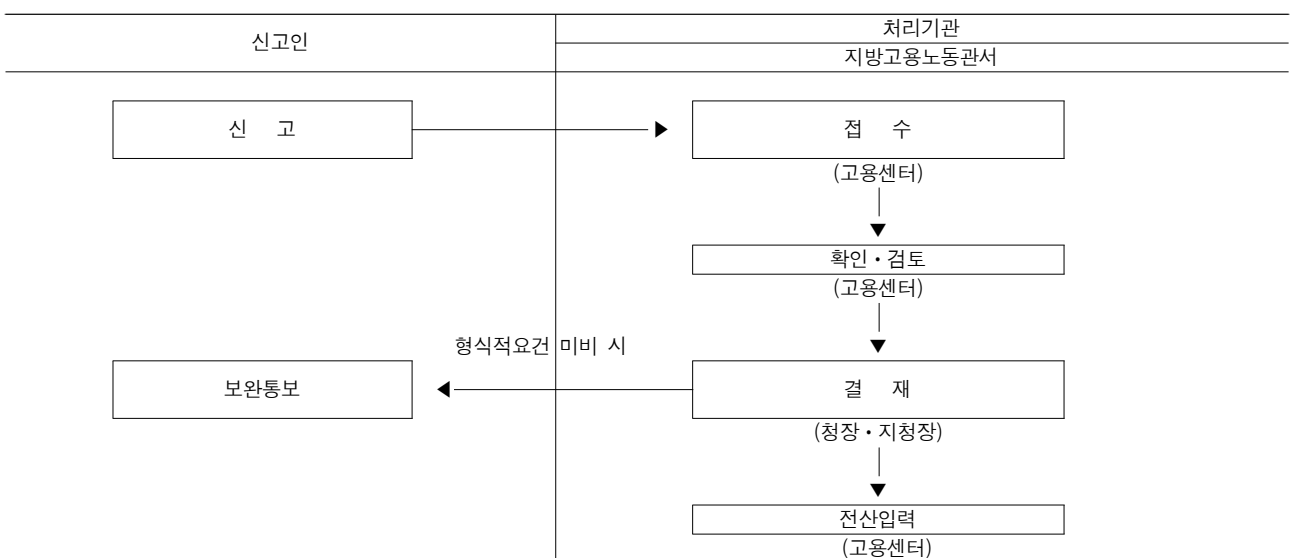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시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의 월의 ③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수의 소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②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적습니다
- ③란은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 ④란은 (월)의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대상 피보험자를 적습니다.
- ⑤란은 "③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 ⑥란은 ① - ⑤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⑦란은 ⑥/①×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⑧란은 ⑥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붙임2

고용유지(휴직)조치 계획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1.1.3>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 계 획 ☐ 계획변경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고용유 지조치 (휴직) 내용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명
기타	고용유지조치(휴직) 사유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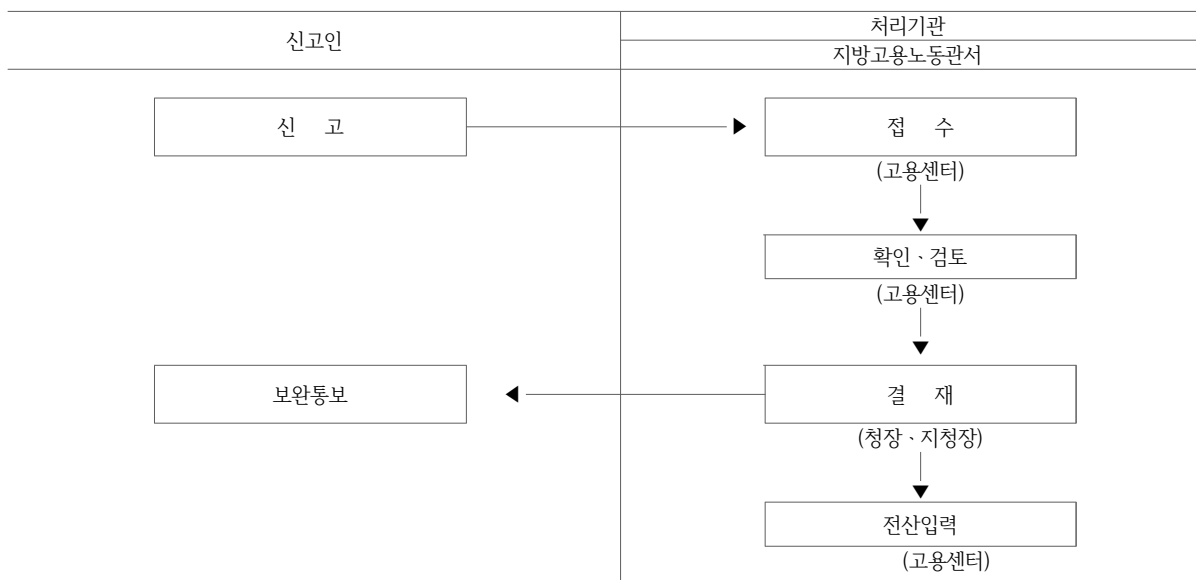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처리절차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12.30>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지원금 신청서

☐ 휴업 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고용유지조치 현황	① (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②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③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시간			④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⑤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⑥ 근로시간 단축률 %		
신청내용	⑦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 원			⑧ 지원율 2/3, 1/2		
	⑨ 지원금 신청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지원율]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름	나이	성별
김민준	25	남
이서연	28	여
박지현	30	여
정민준	32	남
최민준	35	남
한민준	38	남
정민준	40	남
최민준	42	남
한민준	45	남
정민준	48	남
최민준	50	남
한민준	52	남
정민준	55	남
최민준	58	남
한민준	60	남
정민준	62	남
최민준	65	남
한민준	68	남
정민준	70	남
최민준	72	남
한민준	75	남
정민준	78	남
최민준	80	남
한민준	82	남
정민준	85	남
최민준	88	남
한민준	90	남
정민준	92	남
최민준	95	남
한민준	98	남
정민준	100	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지원금신청액	비고
<예시>	홍길동 80. 02. 16	100시간	400,000원	266,666원	
2					
3					
4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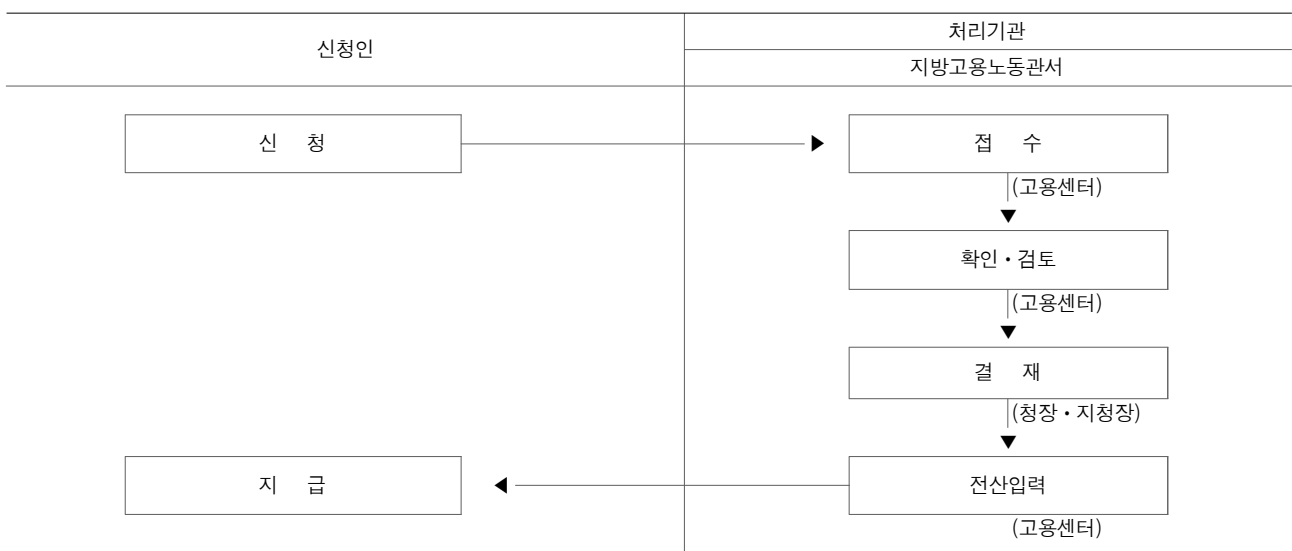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를 한 피보험자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③란은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기준기간)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의 총 근로시간(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④란은 (월)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 ⑤란은 ③란 - ④란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⑥란은 ⑤란/③란×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⑦란은 ⑤란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 ⑨란은 ⑦란 × ⑧란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4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12.30>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신청 내용	①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② (월) 휴직근로자 수	명	③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원
	④지 원 을	2/3, 1/2	⑤ 지원금신청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신청 대상 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원
				원
				원
				원
				원
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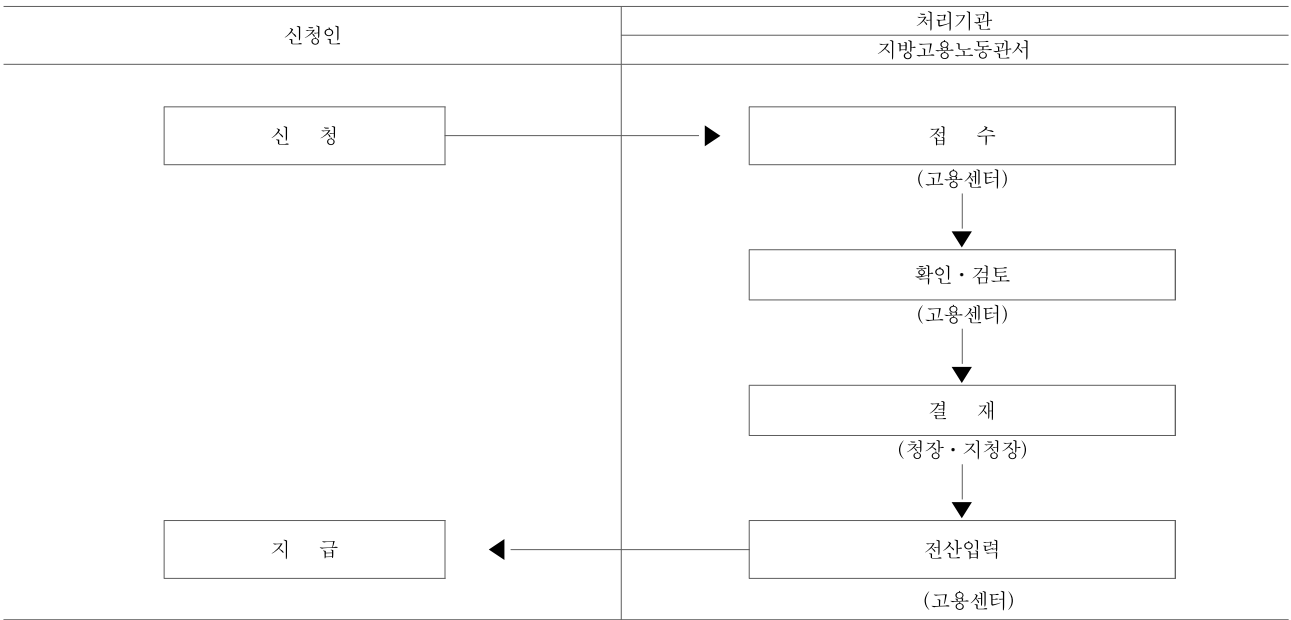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한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②란의 고용유지조치(휴직)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적습니다.
4. ④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밖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5. ⑤란은 ③ × ④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전국 고용센터(문의처)

※ 각종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 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56, 4922, 4978, 4977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 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33, 4737, 4787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 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 송파구·강동구	02-2142-8420,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 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 · 서대문구·은평구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609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 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 구· 강서구	02-2639-2403~240 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 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 · 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171-1833, 1800~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 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 · 금천구·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88~9, 9393~4, 9396~7
	중부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 구· 연수구·남동구 및 용진군	032-460-4811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 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032-540-5751 032-540-5742~5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 부 청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 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시청	부천고용복지 +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
	부천시청	김포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031-920-3962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복 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 시· 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 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 성시	031-231-7897
	성남지청	성남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 평군·이천시·여주시·하 남시	031-739-3170, 3122,4991,4916
	안양지청	안양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과천시·광 명시· 의왕시·군포시	031-463-0761~4, 0767,0768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031-412-6967
	평택지청	평택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2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 성시	031-646-1238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스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 천군· 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 평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 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033-769-0943, 0946, 0960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태백지청	태백고용복지 *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고용복지 *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 창군	033-371-6254
부 산 청	부산청	부산고용복지 *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 구·영도구·남구·부산진 구·연제구·사하구	051-860-1923~7, 1931,2072,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 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 ·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10~5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 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강서구	051-330-9951~995 5
	창원지청	창원고용복지 *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 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복지 *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고용복지 *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7
	양산지청	양산고용복지 *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고용복지 *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 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 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 *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 1814, 1818
대 구 청	대구청	대구고용복지 *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중구·수성구·동 구)·경산시·영천시·군위 군·청도군	053-667-603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 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 서구	053-605-6460~7,6 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 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 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복지 *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7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포항지청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변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51
	안동지청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광주청	광주청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1
	전주지청	전주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07
	익산지청	김제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6
	군산지청	부안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변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061-720-9161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여수지청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40
	여수지청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2
	목포지청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대전청	대전청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12~13, 6015~21
	대전청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대전청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센터 1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043-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천안지청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아산시·예산군	041-620-7441~6
	충주지청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충주지청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	041-930-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462, 4470